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 문예시설관리사업소는 3담당(관리, 전수·박물관, 문화센터)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소 설치보다는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기존 사업소와 통합운영을 위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문예시설관리사업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 주요골자

- 총무국 소관사항 중 “ 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삭제(안 제6조제2항제6호)
- “부녀”를 “여성”으로 하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을 “공중·식품위생업소 및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 관련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으로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7호)
- 제4장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기구 명칭을 변경
- “문예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하며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함(안 제12조제1항)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에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관리”를 신설(안 제14조제4호)

3. 검토의견

안 제6조제2항제6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제6호에 문화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것을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만, 동 사무는 2002년 4월 1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와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조례 제14조제2호). 이번 개정안은 소관사무의 중복을 피하고 사무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부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부녀”를 “여성”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불평등한 내용의 법령이나 조례 등을 개정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그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며, 타 자치단체들도 사회복지 및 여성관련 담당명칭이나 사무 등을 “부녀”에서 “여성”으로 사용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관련 법령의 용어들도 여성으로 되어 있음)

안 제7조제2항제7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7조제2항제7호에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 관련”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업무는 청소위생과, 유통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야간에 이들 업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지도·단속의 경우 업무담당 별로 업소를 출입함에 따라 업소 측으로부터 잦은 지도·감독에 대한 불평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야간 지도·단속에 있어서 잦은 중복단속을 피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개정안처럼 지도·단속업무를 지도·단속팀이 있는 주무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장, 안 제12조제1항 그리고 안 제14조제4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동안 서구청에서는 21세기 문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수계층의 시민들에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자기계발과 능력배양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여가생활의 수요에 부응하는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문예시설들을 개관·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날로 증대하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구청에서는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등과 같은 문예시설 등을 건립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문예시설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1일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서구문화센터관리, 향토문화마을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건립조성 중에 있는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자구수정과 소관 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